

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

I 개 요

- **감사대상:** 어린이집, 경로당,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00개소
- **감사범위:** 2015. 7. 1. ~ 2019. 6. 30. 까지 공공요금 납부건
- **감사기간:** 2019. 7. 29.(월) ~ 9. 20.(금)
- **감사 중점사항:**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감면 제도 적용여부

II 감사결과

1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경감제도 현황

- 2007년 부터 「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 약관」 제67조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 공급가액의 30%(2017년 이전 20%)와 심야 전력 31.4%를 감면 받을 수 있음
- 「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(에스코), 2001년」에 의해 도시가스 요금은 업무난방용 대비 약 16% 요금을 경감할 수 있음. 단, 어린이집 제외

* 2019년 7월 기준 1MJ(열량단위)당 업무난방용 16.5원 ⇨ 산업용 요금 13.9원 적용(△2.6원)

*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경감제도

- 전기요금: 월 전기요금 30%할인(2017년 이전 20%할인),
심야전력은 31.4% 할인
- 가스요금: 산업용 요금 적용(업무난방용 대비 약 16% 경감)

■ **감사결과: 전기요금 미감면시설 00개소, 도시가스요금 미감면 시설 00개소**

2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

1.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감면을 미적용

지적사항

- 한국전력공사(이하 “한전”이라고 한다)에서는 '07. 1. 15.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전기요금 할인 제도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·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
- 한전에서는 2006년부터 기본공급약관 제67조(요금의 계산)에 따라 ‘사회복지사업법’ 및 ‘기초생활보장법’, ‘아동복지법’, ‘노인복지법’, ‘장애인복지법’, ‘영유아보육법’ ‘정신보건법’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016년 12월까지의 공급가액의 20%(주택용 21.6%), 2017년 1월 이후로는 공급가액의 30%를 감면하고 있으며, 심야전력의 경우에는 31.4%를 감면하고 있음
- 그러나 00과, 00과, 00과, 00과, 00과(이하 “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”라 한다)에서는 사회복지관, 경로당, 어린이집 등 총 0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분기별 또는 월별 시설 운영비(국·시·구비)를 지급하면서 공공요금이 절감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

1) 전기요금 감면 미신청으로 감면 미혜택

- 사회복지시설 총 00개 시설 중 00개(임대인 미협조 고지서 확인불가 00개소 포함) 시설은 한전에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, 전기요금 납부액 확인 가능한 00개소에 대한 2015년 7월 ~ 2019년 6월 까지 전기요금 총 납부금액 00원 중 공급가액의 복지할인(30%)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(10%), 전력기금(3.7%)으로 00원(추정액)의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전기요금 감면 미신청으로 전기요금을 과지급하고 있었음

2) 전기요금 별도 계량기 미분리로 감면 미혜택

- 사회복지시설 총 00개 시설 중 00개(임대인 미협조 고지서 확인 불가 00개소 포함) 시설은 대부분 공동주택 및 공동시설 내 임차하여 상주하여 설치비용 부담 및 건물주 협의 등의 사유로 전기요금 별도 계량기 설치의 어려움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, 2015년 7월 ~ 2019년 6월 까지 전기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00개 시설의 총 전기요금 납부금액 00원 중 공급가액의 복지할인(30%)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(10%), 전력기금(3.7%)으로 00원(추정액)의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별도 계량기 미설치로 전기요금을 과지급하고 있었음

3) 24시간 이용시설에 대해 심야전력 계량기 미설치로 감면 미혜택

- 사회복지시설 총 00개 시설 중 00개 시설은 시설대상자가 24시간 상주 이용함에도 심야(밤11시~아침9시) 전기요금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심야 전기요금 감면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, 2015년 7월 ~ 2019년 6월 까지 심야 전기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00복지관의 총 전기요금 납부금액 00원 공급가액의 복지할인

(31.4%)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(10%), 전력기금(3.7%)으로 00원 (추정액)의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심야 전기요금 감면 미신청으로 전기요금을 과지급하고 있었음

조치 사항

00 관리부서장은 공공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 등 조치 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도 감면 제도 재안내하기 바람. (통보)

2.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미적용

지적사항

-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방안의 일환으로 '01. 7. 1.부터 「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」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- 「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」상 일정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은 '장애인 복지법', '아동복지법', '노인복지법', '한부모가족지원법', 등 '사회복지사업법'에 따라 설치되는 해당되는 시설임. 단,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은 제외대상임
-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에 따라 산업용(사회복지)요금으로 적용하면 업무난방용 대비 약 16% 경감할 수 있음
-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·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
- 그러나 00과, 00과, 00과에서는 경로당 등 총 00개 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제외)에 대해 분기별 또는 월별 시설 운영비(국·시·구비)를 지급하면서 공공요금이 절감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

1) 공공요금(도시가스) 경감 신청 미이행

- 사회복지시설 총 00개 시설 중 00개 시설은 한국가스공사(이하 “에스코”라 한다)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하지 않아, 2015년 7월 ~ 2019년 6월까지 별도 계량기(분리신청)가 있는 00개 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총 납부금액 00원 중 사회복지 할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00원(추정액)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미신청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과지급하고 있었음

조치 사항

00과장, 00과장, 00과장은 공공요금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 등 조치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도 경감 제도 재안내하기 바람. (통보)

V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감면 절차 개선

